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	과 장 신상곤 사무관 강희만	042-481-8321 042-481-5400
 	2018년 6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6월 26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,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.

- 특허청, PCT 협력심사(CS&E) 7월 1일 본격 시행 -

-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우리기업의 강한 국제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PCT 출원의 국제조사를 한국, 미국, 일본, 유럽, 중국 등의 선진 5개 특허청(IP5)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PCT CS&E(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; 협력심사)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PCT(Patent Cooperation Treaty, 특허협력조약, 1984년 가입)은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

-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수출형 국내 기업 및 원천기술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술 집약형 국내 기업의 PCT 국제출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.

*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: 1,582건(2000년) → 15,752건(2017년)

- PCT 협력심사를 통해 해외 다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,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PCT 협력심사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는 달리,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므로,
 -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,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그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,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이번 PCT 협력심사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히며,
 - “향후 특허청은 참여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덧붙였다
- 한편, 특허청은, PCT 협력심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, 동일한 발명을 두 나라에 출원한 경우 두 나라 심사관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를 공유하고 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(CSP)사업도 '15년부터 시행 중이다.
 - 현재 특허공동심사사업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시행 중으로, 출원인에게 일관된 심사결과를 확보해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,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한·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동사업의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강희만(☎ 042-481-5400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□ PCT CS&E 개요

- (참여청) IP5 특허청(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, 유럽)
- (기간) '18.7월 ~ '20.6월(2년)
- (출원인 참여) 출원인 신청에 의거, 주심기관이 대상건* 선정
 - * 출원인은 최대 10건을 신청, 주심기관은 정책에 따라 기술별, 출원인별 (개인, 대학, 연구소, 중소기업, 대기업)로 구분하여 대상건 선정
- (처리건수) 주심기관 100건, 부심기관 400건*
 - * 2년간 한국 처리건수 총 500건(주심기관으로 100건, 부심기관으로 400건)
- (수수료) 일반 국제조사와 동일하게 1개 주심기관 수수료만 납부
 - * 한국 특허청 국제조사 수수료 1,218 USD로 5개 특허청이 모두 국제조사를 진행한 효과 (2,080(미국), 1,465(일본), 335(중국), 2,207(유럽), 합계 7,305)

□ PCT CS&E 절차

- (신청) 출원인은 출원 시 주심기관 1개를 선택, 주심기관의 국제조사비(추가비용 없음)와 CS&E 신청서를 IP5 또는 WIPO에 제출
- (국제조사 진행) 주심기관은 부심기관(다른 4개 청)의 의견서를 참고해 국제조사보고서(ISR)를 작성 후 출원인에게 송부
 - 출원인이 선택한 주심기관은 ISR 초안을 작성하여 부심기관에 제공(8주)
 - 부심기관은 PCT 출원과 주심기관의 초안을 검토하고 추가 검색을 진행하여 부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주심기관에 제공(4주)
 - * 부심기관 각각은 다른 부심기관의 부심의견서를 검토할 수 없음
 - 주심기관은 부심의견서 검토해 ISR 최종안 작성, 출원인에 송부(4주)
 - 주심기관의 최종안 및 각 부심기관의 부심의견서는 대외 공개

□ PCT CS&E 신청

- (신청 방법) PCT 출원서와 CS&E 신청서를 모두 영어로 작성하고, 주심기관을 선택하여 수리관청(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)에 제출
 - WIPO ePCT 출원시스템 이용을 권장하며, 신청서는 WIPO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, 특허심사제도과, 국제출원과 등에서 배포
- (신청 건수) 출원인은 개별 주심기관에 최대 10건의 CS&E 신청 가능

□ 주의 사항

-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출원된 국제출원을 처리하기 위하여, 주심기관이 신청서 수령 후 기술분야별로 적절히 분배해 선정* 후 처리
 - * CS&E 신청 선정 여부는 주심 특허청이 조사용 사본 접수 후 결정
- CS&E 처리에 부적절한 사유(출원의 흠결, 염기서열 미포함 등)가 존재하면 CS&E 선정 불가능
-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하여, 단일성 기준을 만족하는 국제출원만 신청*
 - * 단일성이 결여된 경우, '제1 발명의 원칙'을 적용하여 CS&E 수행

□ 기타 사항

- 최종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 및 부심 의견서는 PATENTSCOPE (<http://patentscope.wipo.int/>)를 통하여 공개
- 사업에 참여한 출원인은 PCT CS&E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
- 작성기한은 PCT 규칙 제42.1조를 따르나, 국가 간 협력심사로 인한 부가적 행정 업무가 필요하므로 작성기한을 보장할 수는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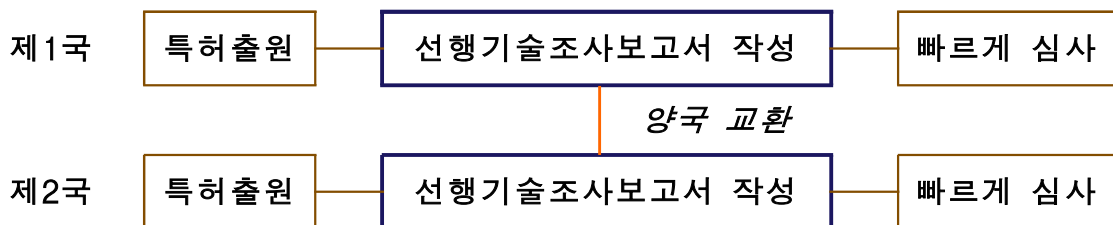
▷ 문의처: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(☎042-481-5741), 국제출원과(☎042-481-5208)
▷ PCT CS&E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kipo.go.kr/>) 참조

붙임 2 특허공동심사(CSP; Collaborative Search Program)

□ CSP 개요

-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, 양국이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협력사업
- '14.10월 선진 특허5개청(IP5) 특허심사정책실무(WG3)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개념 및 상세 절차를 제안

< CSP 개념도 >



□ 출원인 혜택

- 두 나라의 심사관이 선행기술문헌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심사를 진행하므로 높은 심사품질, 국가 간 일관된 심사결과
-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나라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므로, 신속한 권리 취득 가능

□ CSP 현황

- (시행 중) 한·미 CSP 2차 사업('17.11.~'20.10., 1차 시범사업은 '15.9.~'17.8.까지 진행)
- (시행 합의) '17.11. 한·중 청장회담에서 한·중 CSP 사업의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, 세부 사항 논의 중이며 연내 시행을 추진
- (시행 추진) 한·영 CSP 사업('17.9.제안, 심사절차 논의 중)